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2022. 8. 3.)



상품의 안전인증번호·유통기한 등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위고시 제2022-15호)

❖ 주요 개정내용

- ①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
 -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하여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 ②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③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왔다.
-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상품의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보완하였다.

④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증가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표시 지침 (예시)]

구분	품목명	주요 내용
상품 정보	자동차용품	차량용 방향제, 광택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
	농수축산물	1++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마블링)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가공식품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
	식품류 공통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생활화학제품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방법 안내
거래조건 정보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안내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 - URL : <https://www.ftc.go.kr/>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신규조문대비표 주요사항 요약* *일부 내용만 발췌.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현행	개정안
II. 일반원칙 2. (생략)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신설〉 〈신설〉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인증 필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신설〉 〈신설〉	II. 일반원칙 2. (현행과 같음) (38) (39) (40). 4.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가.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나.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다.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표시 예시〉 1) 제조연월일, 제조연월 - 20XX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1월 1일 ~ 20XX년 6월 1일 제조된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등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 2)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최소 20XX년 7월 1일 이후까지인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7월 1일 ~ 20XX년 12월 1일까지인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 제조연월일로부터 6개월까지(단, 통신판매의 수단에 제조연월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 포함) 등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 6. KC인증정보는 KC마크와 식별부호인 증번호, 신고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예시〉 1) KC 인증을 필한 경우 KC식별부호 또는 KC식별부호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이때 소비자의 인증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 소관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가 제공하는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추가적으로 링크하는 방안을 권장함 2) KC 인증을 필했으나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KC 또는 KC 인증 필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3)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KC 인증을 필한 경우 KC식별부호(전자파 적합등록), KC식별부호(전기용품 안전확인)와 같이 KC 마크 주변에 인증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1)의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각각 링크 4) KC 인증이 면제된 경우 ‘본 상품은 고객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전자파」에 따른 전자파 적합등록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면제된 품목입니다.’ 등과 같이 면제되는 인증의 종류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7.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주1)}에 --- 방식 등으로 --- 경우^{주2)}에는 기본 ---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 기본 --- 한편,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이 아닌 별개의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주3)}에는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주1)~주3)